

Latest Legal News and Developments
from the MENA Region

Korean News Digest



Issue #08
(SS 2023)



인사말

안녕하세요. AI Tamimi & Company의 Korea Group입니다.

2023년 계묘년 한 해 건강하시고 사업과 가정에 소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던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가 인상, 물가 상승에 대한 각국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올 해도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말 한-사우디의 40조원에 달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제2 중동 봄’을 견인할 해외건설수주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등 중동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전통적인 오일 산업에 치중하던 중동 지역 주요 국가들이 탈석유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동 지역은 건설 플랜트 산업 부문의 프로젝트 뿐 아니라 수소 및 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100여 개 우리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함께 2023년 첫 순방국으로 UAE를 방문한 윤석열 정부는 한국과 UAE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우디아라비아 뿐 아니라 UAE와 한국의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AI Tamimi & Company (이하 “알타미미”) Korea Group (이하 “한국팀”)은 정기간행물인 Korean News Digest는 물론 알타미미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분야별 법률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현지 진출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최전선의 사업파트너이자 법률자문사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타미미 한국팀 배상

주요 연락처



오마르 변호사
Omar Omar
Partner
Head of Korea Group
o.omar@tamimi.com



김승현 변호사
Seunghyeon (Alex) Kim
Partner
sh.kim@tamimi.com



하지원 변호사
Jiwon Ha
Senior Counsel
j.ha@tamim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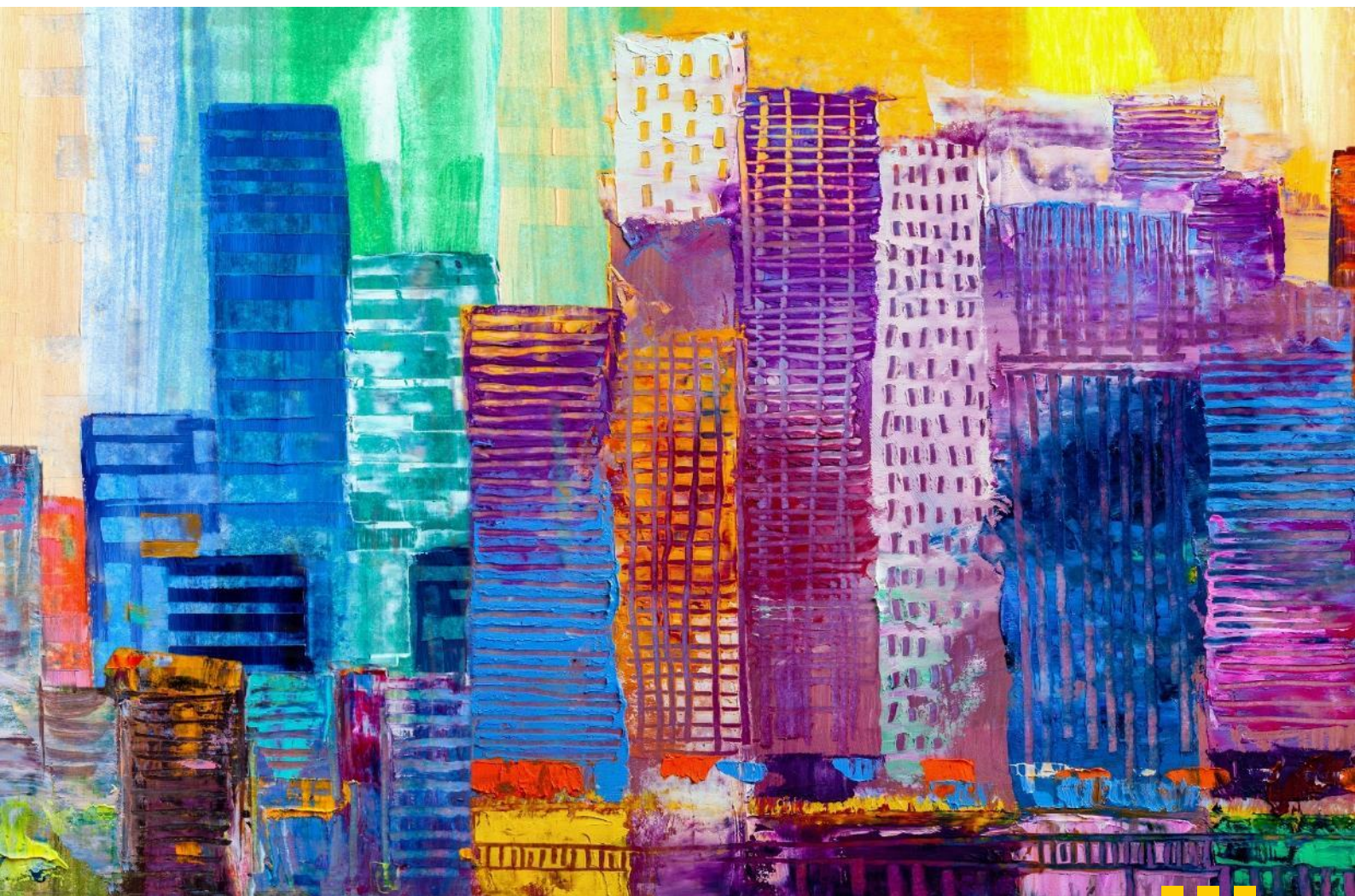
송형민 변호사
Hyungmin (James) Song
Senior Associate
h.song@tamimi.com



박이세 변호사
Issey Park
Senior Associate
issey.park@tamimi.com

Table of Contents

United Arab Emirates – What’s happening?	4
Kingdom of Saudi Arabia - Spotlight on Projects	14
Development in Middle East	21
Africa Focus	27
Al Tamimi & Company News	36



United Arab Emirates – What’s happening?



Payment Orders, Direct Execution And Substantive Claims

- 과거 UAE내에서 미수채권 및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UAE 법원에 실질 청구 소송 (Substantive Claims) 을 제기해야 하고, UAE 소송 특유의 전문가 검토단계 (Expert Stage) 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히 소모적이고 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 하지만 이제는 지급명령 신청 (Payment Order) 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러한 직접적인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통지 없이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해져서 채권자들은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모든 채무가 지급명령 신청에 적합한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법 집행규정 62조 (Article 62 of the Executive Regulation) 에 따라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채권자의 권리가 서면으로 확정된 경우 (이메일 또는 서류의 형식)
 - 2) 만기일이 도래하여 즉시 상환해야 하는 부채
 - 3) 확정된 금액의 채무
 - 4) 상거래 관련 채무
- 또한 민사소송법 시행규칙(개정) 62조, 63조 (Articles 62, 63 of the Executive Regulations of the Civil Procedure Law (Amended)) 에 의거하여 대법원은 1심 소송 개시에 관한 총칙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은 채권자의 청구가 전자적 (이메일) 또는 종이 형식의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권리 보유자가 상업 어음을 소유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실질 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항소가 가능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에 요구되는 채권자의 조건이 충족되고 채무자에게 유효한 반론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의 항소 절차 역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두바이 대법원의 최근 지급명령 사건관련 판결과 집행법원의 직접적인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ecember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dubai-court-judgments-payment-orders-direct-execution-and-substantive-claims/page/1/2>

Labour Law Amendments & New Unemployment Insurance

- 2022년 2월부터 UAE 에서는 신규노동법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UAE 노동시장에는 여러가지 변화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 특히 작년 9월에는 Federal Decree Law No. 14 of 2022 (이하 “노동법 개정안”) 을 발표하면서 신규노동법에 따라 기간제 계약이 최대 3년까지였던 점을 없애고,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5년이든 10년이든 고용계약의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노동법 개정안에 더하여, 최근 UAE 정부는 실업보험 제도를 도입하며, 민간 및 공공부문 모든 피고용인들로 하여금 반드시 실업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용인들은 지난 12개월 간 실업보험에 가입했던 자라면 누구나 실직시 실업 기간동안 기존 기본급의 60%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AED 16,000 이하의 기본급을 수령하던 피고용인들의 경우, 매월 AED 5의 보험금을 납입하면 최대 3개월까지 월 최대 AED 10,000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월 기본급이 AED 16,000이 넘는 피고용인들의 경우, 매월 AED 10의 보험금을 납입하면 월 최대 AED 20,000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피고용인이 노동법 상 징계 사유 (중대한 위법 행위 포함) 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고, 보험금 청구에 사기 혹은 기만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vember 2022

<https://www.tamimi.com/news/the-uae-introduces-amendments-to-the-labour-law-and-unemployment-insurance-key-information/>

Federal Corporate Tax Law is now published

아랍에미리트 (이하 **"UAE"**)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는 2022년 연방 법령 47호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Businesses (이하 **"법인세법"**) 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법은 회계연도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 과세 대상:
 - UAE의 모든 법인격체 (프리존 포함)
 - UAE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해외에 설립된 모든 법인격체
 - UAE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 (i) UAE에 고정적인 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을 보유했거나 ,
(ii) UAE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또는
(iii) 향후 UAE의 내각결정명령 (Cabinet Decision) 에 규정될 연계거점 (nexus) 을 갖고있는 외국인 사업체
- 과세 면제 대상자: 정부 기관,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 천연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 (추출 및 비추출 모두 포함), 적격 공익 및 자선재단, 공공연금 혹은 사회보장기금, 적격 투자 펀드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세법은 과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 법인세율:
 - 과세 소득 AED 375,000 까지 0%
 - 과세 소득 AED 375,000 이상은 9%
-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BEPS 프로젝트의 2번 필라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은 상이한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7억 5천만 유로 (약 AED 31억 5천만) 를 초과하는 통합 글로벌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해당됨).
- 프리존: 적격 프리존 사업자는 적격 소득에 0%로 과세되며, 그 외 소득은 9%로 과세됩니다. 법인세법은 프리존 법인이 적격 프리존 사업자로 과세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 과세 면제 소득: 법인세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있기는 하나, UAE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소득 배분, 지분 참여로 받은 소득 배분, 외국 고정사업장의 소득, 외국에서 국제운송의 비행기 및 선박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면제 대상입니다.
- 세액 공제 (Deductions): 전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발생한 지출은 공제됩니다. 비공제 비용은 비사업 지출, 면제 소득에서 발생한 지출, 비사업적 손실, 기부금, 비적격 공익 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또는 기증, 벌금, 뇌물 또는 불법 지출, 주주에게 배당금, 법인세, 회수 가능한 부가 가치세 등이 포함됩니다.

- 구조조정 구제 (Restructuring Relief):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격 그룹 내 사업 이전 및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 법인세 구제가 제공됩니다.
-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국내 및 국가간 거래에 UAE는 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UAE 역외 소득에 대해 해외 세액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가격: 법인세법은 정상거래가 결정을 위한 규칙을 정하고, " 특수관계인 (related parties) ", " 지배 (control) " 및 " 관계인 (connected persons) " 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 세무 그룹 (Tax Group): 법인세법은 세무 그룹의 구성, 그룹의 과세 소득 및 세금 손실의 결정에 대한 세부 조건을 규정합니다.
- 세금등기등록 (Tax Registration): 모든 과세 대상자는 장관이 규정하는 양식, 방법 및 일정에 따라 법인세에 등록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 회계 연도가 끝난 후 9개월 이내에 납세자는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과세 면제자들 또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록 관리 (Record-keeping): 법인세 관련 기록 및 문서는 이와 관련된 과세 기간이 종료된 후 7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ecember 2022

<https://www.tamimi.com/news/federal-corporate-tax-law-is-now-published/>

Transfer Pricing in the UAE – What should businesses expect?

- 2023년 6월 1일 부터 UAE 에 법인세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전가격 규칙도 UAE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UAE에 여러 법인들을 운영하는 기업은 이전가격 법에 준하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2018년 5월, UAE는 BEPS 포용적 체계의 회원국에 가입하여 BEPS의 최소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결의했고, 2019년 4월에는 경제적 실질 요건 (Economic Substance Requirements) 규제 및 국가별보고서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 2022년 1월 31일, UAE의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이하 “MoF”)는 회계 연도 2023년 6월 1일부터 법인세 제도 도입을 예고했고, 2022년 5월 19일에는 공공협의를 위해 이전가격 규칙의 자세한 내용을, 2022년 말에는 법인세 제정법을 발표했습니다 (알타미미의 법인세법 자료는 앞전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이전가격의 중요성

- 기업의 사업 운영이 글로벌화, 디지털화 되면 그룹 내 특수관계인간 거래량이 상당 수준 증대되므로, 그룹 내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이전가격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 그룹 내 기업들간 거래되는 재화 공급,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의 사용 및 이전, 금융 지원 (대출, 개런티 제공 등) 등의 거래 가격은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므로, 해당 사법권 조세당국의 과세징수액에 영향을 줍니다. 조세당국은 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일반적으로 참고하여 기업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전가격 가이드 /

규칙을 도입하여 규제합니다. UAE의 이전가격 규칙도 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수관계인 (Related parties)

- 다국적 기업 산하의 법인들은 특수관계인 (related parties) 이며, 이전가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특수관계인”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법인들의 특수관계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특수관계인”은 지분관계, 지배관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분관계는 다른 법인의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지배관계는 다른 법인의 사업방향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출생, 결혼, 입양, 가디언과 같은 친족 관계가 해당됩니다. 지분 소유 및 친족 관계는 쉽게 구분가능하나, 지배관계의 경우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UAE 법인세 제도는 다른 사법권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개념인 “관계인 (connected person)” 컨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UAE 법인세법의 과세 범위 내에 있는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개인 (혹은 관련된 자) 을 “관계인”으로 간주합니다. 이 컨셉은 UAE에서 사업주 혹은 사업주와 관련된 자에게 과도한 비용 처리를 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 행위를 금하고자 합니다. 즉, 사업주는 이전가격 규제 조항을 준수하여 이사들에게 급여를 지출했음을 증명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정상가격 거래 원칙 (Arm's length principle)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그룹 내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거래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독립 관계인간의 거래와 동일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말하면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그룹 내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거래 원칙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즉, 계약 조건, 특수관계인간 수행되는 활동, 동산 및 서비스의 성격, 경제적 특성, 사업 전략 등이 그룹 내 거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 이전가격 문서 준비 요건

- UAE의 공공협약 자료를 볼 때, 법인세 제도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전가격 문서 준비에 3단계 접근 (three-tiered approach) 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i) 마스터파일 (통합기업보고서), (ii) 로컬파일 (개별기업보고서), (iii) 국가별보고서입니다.
- 연결 매출 기준에 따라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을 준비해야 하는 기업의 준비

기한 및 미준수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걸프 지역 국가들에서 도입한 이전가격 문서 요건을 참고할 때, UAE도 기업의 특수관계인과 관계인과의 거래들과 관련된 정보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마스터파일 (통합기업보고서): 다국적 그룹의 글로벌 사업 운영의 특성, 이전가격 정책들, 소득 및 경제 활동의 글로벌 배분 등 글로벌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 로컬파일 (개별기업보고서): 마스터파일을 보완하는 자료로서, 특정 그룹내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가별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내용은 다국적 그룹의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등 재무 정보, 직원, 자산을 포함합니다. 또한, 그룹의 국가별 자회사와 주요 사업내용이 포함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정보 제공 (Disclosure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 기업은 “특수관계인” 그리고 “관계인”과의 모든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이름, 거래 종류, 양, 이전가격 접근 등의 정보를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 기업의 대응방안

- UAE에 이전가격 규칙이 도입되는 것은 조세 제도의 상당한 변화로 UAE의 기업은 이전가격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AE의 이전가격 제도는 국외 및 국내의 그룹내 모든 종류의 거래를 포함할 것입니다 (즉, 재화, 서비스, 무형 자산, 금융 거래). UAE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은 다음의 요소들을 주의깊게 검토하여 이전가격 규칙이 기업이 미칠 영향을 미리 대응해야 합니다.

- 1) MoF의 가이드라인에 비추어볼 때 “특수관계” 여부를 평가
- 2) “특수관계인” / “관계인”에 해당되는 거래 확인
- 3) 해당 거래의 정상가격 적용 여부 평가
- 4)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이전가격 문서 준비

- 기업은 세무 및 이전가격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모델을 검토해야 합니다. UAE의 기업들은 현실감있고, 국제 이전가격 모범사례에 맞는 세무 및 이전가격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므로 기업은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ctober 2022

<https://www.tamimi.com/news/transfer-pricing-in-the-uae-what-should-businesses-expect/>

Recent Development in Abu Dhabi Construction Arbitration

배경

- 걸프 지역내 국제 분쟁은 대체로 중재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조정 및 중재센터 (Abu Dhabi Commerc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이하 "ADCCAC") 는 1993년에, 두 바 이 국 제 중 재 센 터 (Dub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DIAC") 는 1994년에 각각 설립되었는데, 아무래도 후자인 DIAC 을 보다 활발한 중재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금융자유구역 (Financial Free Zone) 의 설립은 두바이의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이 하 " DIFC") 가 2004 년 , 아부다비의 아부다비글로벌마켓 (Abu Dhabi Global Market, 이하 "ADGM") 이 2013년으로, 이후 2008 년 DIFC 에 두 바 이 국 제 금 융 센 터 - 런던 국제 중 재 법 원 중 재 센 터 (DIFC-LCIA Arbitration Centre, 이 하 " DIFC-LCIA") 가 설 립 되 었 고 , 2015 년 ADGM 에 아부다비글로벌마켓중재센터 (ADGM Arbitration Center) 가 설립되어 심리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선호되는 이유로는 아랍에미리트의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과 DIFC 법원의 이용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중재법 (DIFC Arbitration Law) 및 아부다비글로벌마켓 중재법 (ADGM Arbitration Regulations) 에 이어 국제거래법에 관한 국제연합 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 을 받아들여 역내 (onshore) 중재도 모델법에 기초하게 된 바 있습니다.

DIFC-LCIA의 폐지

- DIAC에 관한 2021년 두바이령 34호에 의해 런던국제중재법원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의 지원을 받아 DIFC-LCIA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중재기관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Arbitration Institute) 이 폐지되어 DIFC-LCIA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DIFC-LCIA의 폐지는 아부다비의 관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으나, DIFC-LCIA로부터 DIAC으로의 이행 (移行) 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고, 특히 DIAC의 2022년 중재규칙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구속력 있는 중재합의

- 아랍에미리트 중재에서 자주 문제시 되는 이슈는 중재합의를 체결할 권한 여부입니다. 최근 아부다비 대법원은 중재합의의 체결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합의의 체결이 그러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더욱더 위임장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을 중재절차에 회부할 권리

- 일반적으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분쟁의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하기 전에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들을 중재에 회부합니다. 즉, 중재합의에 위반하여 제소되더라도 피고가 중재합의에 기한 항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를 중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최근 아부다비 대법원은 피고가 항변을 하면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한 사안에서 분쟁을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

- 대체적 분쟁해결의 다른 하나인 조정 (Mediation) 은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구속력이 없는데, ADCCAC 및 아부다비글로벌마켓 중재센터는 조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정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법원조정에 관하여는 1999년 연방법 26호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민사 및 상사 분쟁의 조정에 관하여는 2021년 연방법 6호가 있는데, 최근 조정에 의한 국제적 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에의 가입을 긍정적으로 고려 중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uly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law-update-issue-349-real-estate-construction-and-real-estate-construction-and-hotels-and-leisure/page/8>

Kingdom of Saudi Arabia - Spotlight on Projects



Regulatory Framework for Water and Energy Projects in the KSA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와 수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하 에너지와 수력 분야의 관할 정부기관, 키플레이어 및 주요 법률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Energy

관할부처

- Ministry of Energy: 에너지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

- Saudi Electricity Company (SEC): 45개 이상의 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생산, 전송 및 분배하는 역할 수행
-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 (SWCC): 담수플랜트 및 수력발전소 운영을 관할하는 정부소유 회사
- Saudi Power Procurement Company (SPPC): SEC의 자회사였으나 현재는 정부 소유 회사로서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발전소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의 독점적인 매수인
- Water and 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WERA): 전력과 담수 분야를 감독하기 위하여 설립된 감독 기관
- National Grid SA: SEC의 자회사로서 송전 네트워크의 계획, 설계,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 Saudi Water Partnership Company (SWPC): 정부 소유 회사로서 민간 기업들이 독립적인 수력 및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off-taker로서의 역할을 수행
- Saudi Aramco: 정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

주요 법령

- Electricity Law: 본 법에 따라 에너지부는 WERA를 통해 전력 산업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전력의 생산, 열병합 발전, 송전, 배분 및 교환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WERA로부터 해당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의 종류 및 요건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Grid Code: WERA가 제정한 기술규정으로서 전송시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동향

- 비전 2030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발전 및 전송 분야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민간 기업의 투자 (Public Private Partnership) 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 (NREP) 에 따라 5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SPPC에 의하여 발주되었으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사업들이 계속 발주될 예정입니다.

2. Water

관할 부처

-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and Agriculture (MEWA): 환경, 수자원, 농업 분야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감독을 책임지는 정부기관. 지속가능한 수도 공급과 폐수 처리를 위한 정책을 시행

키플레이어

- Water and 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WERA): 전력 및 담수 분야를 감독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기관. 담수의 생산, 배분, 운송, 라이선스의 발급, 인프라 관리 및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의 역할의 수행
- National Water Company (NWC): PIF의 자회사로서 하수 처리에 관한 서비스 제공
- Water Transmission and Technologies Company (WTTTCO): MEWA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담수의 운송, 배분, 저장,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Saudi Water Partnership Company (SWPC): 정부 소유 회사로서 민간 기업들이 독립적인 수력 및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off-taker로서의 역할을 수행
-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 (SWCC): 담수플랜트 및 수력발전소 운영을 관할하는 정부 소유 회사

주요 법령

- Law of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 SWCC의 설립에 관한 근거 법령으로서 담수 산업과 관련한 SWCC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Organizational Arrangement of Water Plants/Factories: MEWA의 역할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Water Law: 수자원 및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 Regulating the Water and 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WERA의 책임 및 역할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

- 2022년 3월 열린 MENA 담수 프로젝트 포럼에서 SWPC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향후 약 60개의 담수 프로젝트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프로젝트의 규모는 약 35 billion 사우디 리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담수 산업에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정부 주도 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PPP 방식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vember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regulatory-framework-for-water-and-energy-projects-in-the-kingdom-of-saudi-arabia/page/1>

Blue and Green Hydrogen Production in Saudi Arabia: An unfolding story

비전 2030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강조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게 있어서 수소 산업은 산업 다각화, 에너지 수출의 극대화 및 탄소 저감, 즉 “Net-Zero”를 달성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황

- 현재까지 수소는 에너지원이라기 보다는 주로 제조 공정, 특히 석유화학 산업에서 원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에너지 생산에서의 수소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소를 메탄이나 전기와 같은 에너지원으로 쉽게 전환하는 기술이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블루 및 그린 수소의 중요성

- 현재 수소는 에너지 인텐시브한 공정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하 “그레이 수소”). 수소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생산 방식 자체가 저탄소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 저탄소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2가지 대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 태양열, 풍력 등 저탄소 발전 방식에 의한 수소 생산 (이하 “그린 수소”)
 -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함으로써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방식의 수소 생산 (이하 “블루 수소”)

- 사우디아라비아는 블루 수소 및 그린 수소의 생산을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플랜트를 Neom에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로는 Neom, Air Products 및 ACW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블루수소의 생산단가는 2030년까지 16%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루 수소의 공급 증가는 철강, 시멘트 등 전통적으로 많은 탄소배출을 수반하였던 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블루수소의 생산 비용은 그린수소의 생산 비용에 비하여 저렴하지만 그레이 수소 보다는 높습니다. 신기술이 개발되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비용은 감소할 것입니다.

- 블루 수소의 주요 생산국이 되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장된 천연 가스의 상당 부분을 블루 수소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블루 수소의 생산, 저장 및 운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고, 수소 산업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적용 법률

- 블루수소 및 그린수소의 생산을 규제 및 감독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블루수소 및 그린수소의 생산을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1. 블루수소

- 블루수소의 생산은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수소 생산 공장 부지 또는 위치에 관한 예비적인 정보
 - 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보고서
 -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위하여 요구되는 가스의 양
-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허가 및 산업부로부터 블루수소 생산과 관련된 인더스트리얼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2. 그린 수소

- 그린 수소의 생산도 에너지부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인은 산업부로부터 그린수소의 생산을 위한 인더스트리얼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수소 산업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 2021년에 발표된 성명에서 당시 에너지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향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소 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수소 생산에 관한 전략을 발표한 바는 없지만 수소 개발 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에 대한 산업 의존도를 최소화 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야하는 시점에서, 수소 산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으로서 수소 생산에 최적화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바른 정책과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된다면 수소 산업 분야에서 세계 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vember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blue-and-green-hydrogen-production-in-saudi-arabia-an-unfolding-story/page/1>

The Nuclear Energy Regulatory Framework in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120 기가와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감독기관을 설립하고, 종합적인 법률, 규제 및 라이선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발전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0년 King Abdullah Centre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K.A.CARE)를 설립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년 원자력 산업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비전 2030 선포 직후에 대형 및 소형 원자로 개발사업을 차례로 승인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원자력 규제기관인 Nuclear and Radiological Regulatory Commission (NRRC)를 설립하고, 2020년에는 Saudi Nuclear Energy Holding Company를 설립하는 등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원자력 관련 법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자력 산업 분야를 규제하는 2개의 대표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he Law of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Royal Decree No. M81 of 11 April 2018):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발생한 사고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밖에서 운반 도중

발생하였으나 원자로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2. The Law of Nuclear and Radiation Control (Royal Decree No 82 of 11 April 2018) (이하 “LNRC”): 원자력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원자력 분야의 라이선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

LNRC는 안전 기준의 설정 및 달성, 인간 및 환경의 적절한 보호, 국제조약의 준수와 같은 목표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 (방사능의 노출, 방사능 물질의 운반 등을 포함) 및 시설에 적용됩니다. LNRC는 NRRC가 원자력 관련 라이선스의 발급, 세이프가드의 운용, 방사능 물질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한 준칙 제정, 페널티의 부과 등 원자력 산업 분야 전반을 감독 및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NRRC는 이에 따라 원자력 시설의 설계, 건설, 면허, 운용 및 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기재한 Technical Regulations를 공표하였습니다. 각 Technical Regulations는 상호 보완적이며, 국제적인 기준과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의 주요 단계는 사업부지 라이선스, 건설 라이선스, 운영 라이선스, 폐기 라이선스 및 폐쇄 라이선스로 구분됩니다.

라이선스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Technical Regulation NRRC-R-03가 핵심적인 문서라고 하겠습니다. 위 문서는 라이선스의 요건, 취소 및 정지 등 원자력 시설 라이선스와 관련된 요건들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NRRC로부터 면제를 받지 않는 이상 라이선스 없이는 원자력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자력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 조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1년 3월 17일에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3년) 및 비엔나 협약 변경을 위한 프로토콜 (1997년)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LNRC 및 NRCC의 Technical Regulations은 원자력 산업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LNRC 및 Technical Regulations을 위반할 경우 라이선스가 취소 혹은 정지될 수 있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회사 및 임직원들에게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어

K.A.CARE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관련 법령 및 규제 기관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원자력 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vember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the-nuclear-energy-regulatory-framework-in-saudi-arabia/page/1>

Development in Middle East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 in the Middle East

중동 국가들에서도 최근 경쟁법이 발전하면서 중동 각 법역의 경쟁당국들은 경쟁법의 시행 및 집행과 함께 위반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쿠웨이트의 경쟁당국인 Competition Protection Agency (이하 “CPA”)는 2020년 법률 72호와 2021년 시행 규정 14호에 따라 과거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새로운 부문들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관련 담당자들의 능력을 제고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등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PA의 특별 재판소인 징계 위원회 (Disciplinary Council)에서는 상소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며, 대부분의 위반에 대한 처분으로는 이전 회계연도 기준 총 매출액의 10% 상한의 벌금이 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CPA의 요청을 준수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총 매출액의 1% 상한으로 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합의는 징계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가능하나, 합의금은 벌금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반 사항 (주로 가격 담합, 시장 할당 및 담합 입찰과 관련된 범죄)을 자진하여 신고한 당사자는 기소에서 면제됩니다.

이집트

이집트 당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정교하며 입증된 집행 및 제지 효과를 낳는 판결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경쟁당국인 Egyptian Competition Authority (이하 “ECA”)은 2005년 법률 3호의 제정 이후 더욱 활발히 활동

중이며, 특히 ECA의 이사회는 이집트 총리와 연결되어 직접적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CA는 2021 - 2025년 전략을 발표했으며, 경쟁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을 발표했습니다:

- 내부 고발자는 기소에 대한 완전한 면제를 제공
- 조사 및 경제 검토 부서 뿐만 아니라 정부 입찰 시, 입찰 담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부서 출범
-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변환 (예: 시장 모니터링 보고서 및 비용 계산 시스템)
- 감시 및 시장 모니터링에 협력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과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
- ECA 직원을 대상으로 경쟁법 및 경제 교육을 위한 교육 워크숍

ECA는 사례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린 뒤에 형사 법원에 회부합니다. 카르텔, 재량권 남용 및 수직적 계약은 위반 대상 제품 / 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의 1-12%에 이르는 벌금으로 제재됩니다. 연간 매출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벌금은 EGP 300,000 (약 USD 15,000) ~ EGP 500,000,000 (약 USD 25,000,000)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ECA 요청 미준수, 합병 미통지의 경우 벌금은 최대 EGP 500,000 (USD 25,000)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UAE 경쟁법은 2012년 연방법 12호를 통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경쟁 부서인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Department (이하 "CPCD") 는 대부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나 CPCD는 아직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CPCD는 경쟁제한법의 및 재량권 남용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다루나 그 결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른 처벌은 법원이 정한 벌금 AED 500,000 (약 USD 136,000) 에서 AED 5,000,000 (약 USD 1,360,000)사이로 부과됩니다. AED 2,000,000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 사건이 법원에 회부되기 전에 CPCD 에서 합의에 도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merger control) 절차의 미준수에 대한 제재는 연간 총매출액의 2-5%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벌금의 범위로 제재됩니다.

카타르, 요르단, 오만

요르단, 오만, 카타르는 모두 공개되지 않은 집행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법 발달 동향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 현재 카타르는 집행 가능성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요르단은 경쟁법을 제정한 지 2년 후인 2004년부터 존재해 온 경쟁이사회 (Competition Directorate) 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오만 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MoCIIP) 의 경 쟁 및 독 점 방 지 센 터 (Competition and Monopoly Prevention Centre) 는 오만의 경쟁법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쟁당국인 General Authority for Competition (이하 "GAC") 은 지나치게 활발하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중 동 지 역 에서 가장 활 발 한 경쟁당국이며, 합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자의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 혹은 위반 행위로 취득한 가액의 3배에 달합니다. GAC는 위반 행위의 중단을 명령할 권한도 있습니다. 2020년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집행관이 95건의 조사와 35건의 집행 보고서를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된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입찰의 담합은 27.2%
- 가격 담합은 20.4%
- 재량권 남용은 15.9%

위반에 대한 최종 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SAR 2,600,000 (약 USD 690,000) 에서 SAR 5,000,000 (약 USD 1,330,000) 사이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Pepsico Services LLC 에 관 한 사 례 를 보 면 2020년도에 시장 집중도를 보고하지 않은 사유로 SAR 10,000,000 (약 USD 2,660,000) 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cember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enforcement-of-competition-rules-in-the-middle-east/>

Turning towards Mining in the Middle East

중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사업비중이 높았지만,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에너지산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광업 (mining) 개발에 대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본 고에서는 해당 국가들의 주요 관련 프로젝트들과 관련 법률 및 규제당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만

- 2020년에 에너지광물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s, 이하 “MEM”)로 관련 부서를 모두 이전한 후, MEM 은 별도의 산하 위원회로 Industry Development of Energy and Minerals 를 두어 원자재 수출보다는 자국내에서의 광물 프로세싱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광물자원개발공사 (Minerals Development of Oman, 이하 “MDO”) 는 2022년 한해만도 8개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으며, 주로 동, 석회암, 백운석 등을 생산 (upstream development) 하고 티타늄, 알루미늄 관련 제품을 상용화하는 제조 활동 (downstream manufacturing)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주요 프로젝트: Shaleem Industrial Minerals in Dhofar, the Mazoon Mining Project 등
- 관련법률 (Regulatory Framework)
 - Mineral Resources Law (Royal Decree No. 19 of 2019)
 - The Executive Regulations of the Mining Law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Decision No. 77 of 2010)
 - Decision No. 48 of 2018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limate Affairs
 - Omanisation requirement



사우디아라비아

- 대표적인 광업회사인 Ma'aaden (Saudi Arabian Mining Company) 의 주요 프로젝트
 - Al Jalamid (phosphate mine and beneficial plant)
 - Ras Al Khair (Phosphate and aluminum processing complex)
 - Al Ba'itha (Bauxite mine for aluminum project)
 - Az Zabirah (Kaolin and low grade bauxite mine)
 - Zarghat (Magnesite mine)
 - Al Madina Al Manawara (Magnesite processing facility)
- 광업허가 (Licenses)
 - 정찰/자원수집면허 (Reconnaissance License)
 - 탐사면허 (Exploration License)
 - 개발면허 (Exploitation Licenses)
 - 채굴면허 (Mining license): 30년 유효, 반경 50제곱 킬로미터로 제한됨
 - 소규모 채굴면허 (Small Mine License): 20년 유효
 - 채석면허 (Building Material Quarry License): 10년 유효, 반경 1제곱 킬로미터로 제한됨.
- 관련 법률 (Regulatory Framework): Mining Investment Law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vember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turning-towards-mining-in-the-middle-east/page/1/1>

Oman's Movement into Diversifying its Energy Sources

다른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에 발맞추어, 오만에서도 Vision 2040 및 국가에너지전략의 목표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총 국가전력 대비 최소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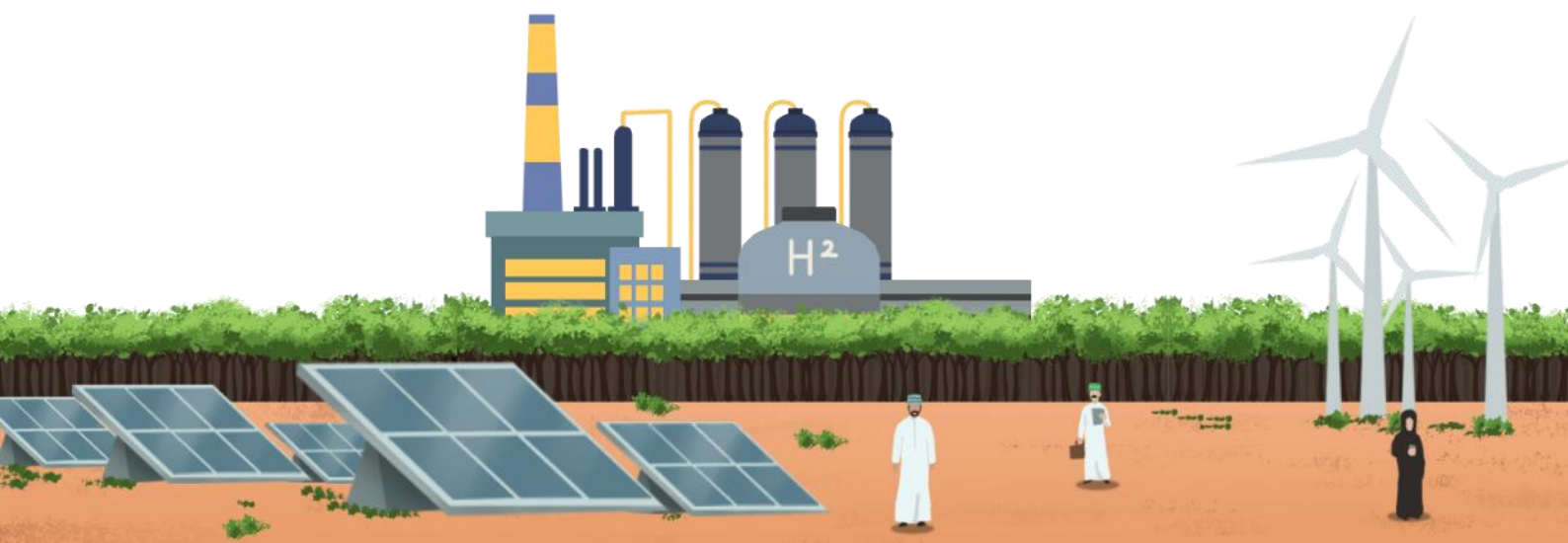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를 포함하는 오만의 재생에너지 분야를 관장하는 법률은 Royal Decree No. 78 of 2004, the Law for the Regulation and Privatization of the Electricity and Related Water Sector (이하 “**Sector Law**”) 이고, 주관 부서는 에너지광물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s) 입니다.

Sector Law 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성장을 주도하는 기관은 오만의 공공서비스규제기관인 Authority for Public Services Regulation (이하 “**APSR**”) 과 수전력조달공사인 Oman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 (이하 “**OPWP**”) 로서 해당법에서는 APSR 이 국가정책시행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관련 규정들을 발행하고, OPWP 는 국가내 수요에 맞는 수전력 확보를 보장하고 APSR 의 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분야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입찰과정을 통해 프로젝트 조달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만 내 전력관련 규정을 총괄하는 Authority for Electricity Regulation (이하 “**AER**”) 에서는 전력 및 수자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과 개발을 위한 책임을 지고, 관련허가 보유자들을 평가하는 정책, 계획, 절차 등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며,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자금지출, 기술 및 조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효율성을 재고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vember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omans-movement-into-diversifying-its-energy-sources/page/1>

Africa Focus



Resolution of Cross-Border Trade, Investment, and Commercial Disputes in the AfCFTA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이하 “AfCFTA”) 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거의 2년이 지났습니다. AfCFTA는 44개의 회원국가가 협정에 서명하여 2019년 5월 30일 시행된 이래, 현재 55개 아프리카 국가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 국가가 서명을 완료했고, 2022년 5월 30일 기준 54개 서명국 중 43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습니다 (80%).
- 2050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는 25억에 이를 것, 아프리카의 노동인구는 전 세계의 노동인구의 26%를 차지할 것,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은 개발도상국의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AfCFTA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AfCFTA는 재화와 서비스, 외국인 투자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하는 단일 대륙 시장을 창출하여 역내 무역을 신장하고 아프리카의 결속과 발전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관세, 수출입 금지, 교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등의 무역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자는 니즈에서 탄생했습니다. 국제 교역, 외국인 투자의 신장으로 불거지는 상업 분쟁 또한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분쟁 해결의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 AfCFTA 협정의 20조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이하 “DSM”) 을 다루며, 분쟁 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의정서 (이하 “DSM 의정서”) 는 회원국가간의 분쟁을 다루는 분쟁해결 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 를 다룹니다.

- 투자 의정서에는 투자자가 회원국가를 상대로 국제 중재에 직접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메커니즘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fCFTA 협정에서 직접 다루는 주제는 아니지만 AfCFTA 협정에 따라 아프리카내 무역이 증가하면 국제상사중재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증가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분쟁해결 메커니즘 (DSM)
 - 세계 무역 기구 (WTO) 분쟁해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DSM은 회원국가간의 분쟁해결 시스템이므로 기업과 개인은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회원국가가 AfCFTA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업 및 개인의 본국 혹은 해당 회원국가에 이슈를 제기해야 합니다.
 - 분쟁은 회원국가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른 회원국가와 협의를 요청하는 DSM 의정서 7조를 발동하면서 시작됩니다.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협의를 시작한 회원국가는 패널 구성을 위해 동 이슈를 DSB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DSM 의정서 10조는 패널의 구성을 규정합니다.

- DSB는 분쟁 해결 패널과 항소기구 (Appellate Body, 이하 “AB”)를 설립할 권한을 갖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패널의 결과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사건은 AB로 이관됩니다. AB는 법, 국제 교역 및 전문성을 입증한 공인된 권위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ISDS)
 - AfCFTA의 분쟁해결 부문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AfCFTA의 분쟁해결 옵션이 무엇일지, 투자자가 회원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 중재에서 투자 관련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ISDS가 투자 의정서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투자 의정서에 분쟁 예방, 단계적 축소,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을 포함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 옵션으로 조정 (Conciliation), 조정 (mediation) 및 국내구제완료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가 의정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의 합법성과 투명성의 부족, 비일관적인 결정, 높은 중재 절차 비용 등 전통적인 형식의 투자자 국가 중재에 우려를 표하는 일부 회원국가들도 있습니다.
- 국제상사중재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세계은행은 AfCFTA가 올해 말까지 아프리카내 교역을 52%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프리카내 무역과 투자가 증가하면, 무역 당사자 간 분쟁도 증가할 것이며 대부분의 분쟁은 국제상사중재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제 분쟁의 국제상사중재로의 항소는 주로 다음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a) 현지 법원의 판정보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New York Convention)의 중재 판정의 집행력이 강력하다는 점 (실제로 55개 아프리카 국가 중 42개 국가가 뉴욕 협약의 서명 국가임), (b) 분쟁 당사자의 본국 법원에서 다투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c) 중재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즉, 중재위원회), (d)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절차라는 점 (국제상사중재가 늘 비용효율적이진 않음).
 - 아프리카 대륙에는 국제상사중재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중재 기관이 있습니다. Arbitration Foundation of Southern Africa (AFSA), Cairo Regional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RCICA), Casablanca International Med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CIMAC), Kigal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KIAC), Lagos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LACIAC), Lagos Court of Arbitration (LCA), Nairobi Centr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NCIA), OHADA Common Court of Justice and Arbitration Centre (CCJA), Ouagadougou Arbitration and Mediation & Conciliation Centre (OAMCC), 그리고 Regional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agos (RCICAL)입니다.



- 결론
 - COVID-19 팬데믹으로 AfCFTA 협상의 진행은 조금 지연되었으나, 2022년 말까지 2단계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단계는 회원국가간 분쟁해결인 DSM 형식의 분쟁해결을 다루고, 2단계는 ISDS를 다루고 있지만 AfCFTA의 법적 및 제도적 구조에서 ISDS의 미래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AfCFTA에서 직접 논의하는 주제는 아니나, 국제상사중재는 아프리카의 국제 교역, 투자 및 상업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ptember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resolution-of-cross-border-trade-investment-and-commercial-disputes-in-the-afcfta/page/1>

AfCFTA Recent Developments with Louis Afful of Africa Policy Network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이하 “AfCFTA”) 는 최대 자유무역지대로서 아프리카 연합 55개국과 6개의 지역공동체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를 포함하며, 총 13억 명의 인구와 GDP 3조4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단일경제권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fCFTA은 아프리카내 무역 장벽을 허물어 역내 무역을 증진함으로써 지역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산업화, 일자리 창출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타미미는 2021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AfCFTA의 가나 AfCFTA 정책 네트워크 그룹 이사인 Louis Afful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일들과 향후 기대되는 변화들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fCFTA의 현 상황과 앞으로 주목한 점을 간단히 정리해주시오.

- 2018년 체결된 AfCFTA 협정은 현재까지 55개 아프리카 국가 중 54개 국가가 서명했고, 재화 무역에서 관세의 90% 자유화, 인력의 자유화를 실현하여 지역내의 교역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유무역지대 협정의 1단계인 재화 및 서비스의 교역, 분쟁해결입니다. 재화의 교역은 '원산지 규정'이라는 넥서스가 있으며 87.3%가 교역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서비스의 교역은 12개의 우선부문 중 5개 부문인 관광, 운송 (항공, 해상, 도로, 철도, 수상), 전문 기관 (변호사, 교사,

의사), 금융 기관 (은행, 보험) 및 ICT 부문이 현재 자유화되었으며, 나머지 7개 부문인 교육, 헬스케어,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 자동차 운송 서비스, 스포츠 및 환경 서비스 부문이 곧 자유화될 것입니다.

- 협정의 2단계는 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정책 의정서의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며, 3단계는 디지털 교역, 교역에서의 여성 및 청년을 다룹니다.
- 아젠다 2063은 하나의 아프리카 시장, 하나의 아프리카 통화, 하나의 아프리카 여권, 하나의 아프리카 항공 우주 등의 실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AfCFTA 협정에 따른 무역 현황과 관세 자유화 절차는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 관세 자유화: 7개국 (르완다, 카메룬, 이집트, 가나, 케냐, 모리셔스, 탄자니아) 시범 참여국으로 2022년 9월 말로 교역을 시작했으며, 관세 자유화는 국가별 역량에 따라 5년, 10년, 15년의 기간을 갖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회원국가는 '선진국 (Developed economies)' 과 '최빈국 (Least developed economies)' 의 두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며, 아프리카의 선진국들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관세 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범아프리카 지불 결제시스템 (PAPSS): PAPSS를 통한 대금 결제는 현재 7초 만에 현지 통화로 송금되고, 수취인은 각자의 통화로 대금을 수령하므로 경통화 (hard currency) 결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증명서와 제품 등록의 조화: 한 회원국가에서 등록된 제품이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므로 회원국가들간의 기술적 장벽이 없을 것입니다.
- 특혜 관세: 최혜국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5년 후 특혜 관세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종료 조항을 포함합니다.

현재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 농업 비즈니스, 자동차 산업, ICT, 운송 및 물류, 헬스케어 부문이 우선 산업 부문입니다.
- 회원국가들의 세관이 AfCFTA 제품을 통관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즉 한 회원국의 인력이 다른 회원국가로 자유롭게 입국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입니까?

- 그동안의 주된 문제는 회원국가들이 AfCFTA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제반사항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증명서와 제품 등록의 조화입니다. 회원국가간 증명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기술적 장벽은 계속될 것입니다.
- 또 다른 문제는 세관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역량이 부족하거나 법률적으로 통관 절차를 규제하는 제정법이 없거나, AfCFTA 제품이 항구에 들어올 때 관세 인하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슈들입니다. 이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협정은 특혜관세를 바탕으로 하므로, A, B, C 국가가 다른 제3국과 자유무역지대 밖에서 별도의 계약을 맺는 것은 본 협정의 목표를 훼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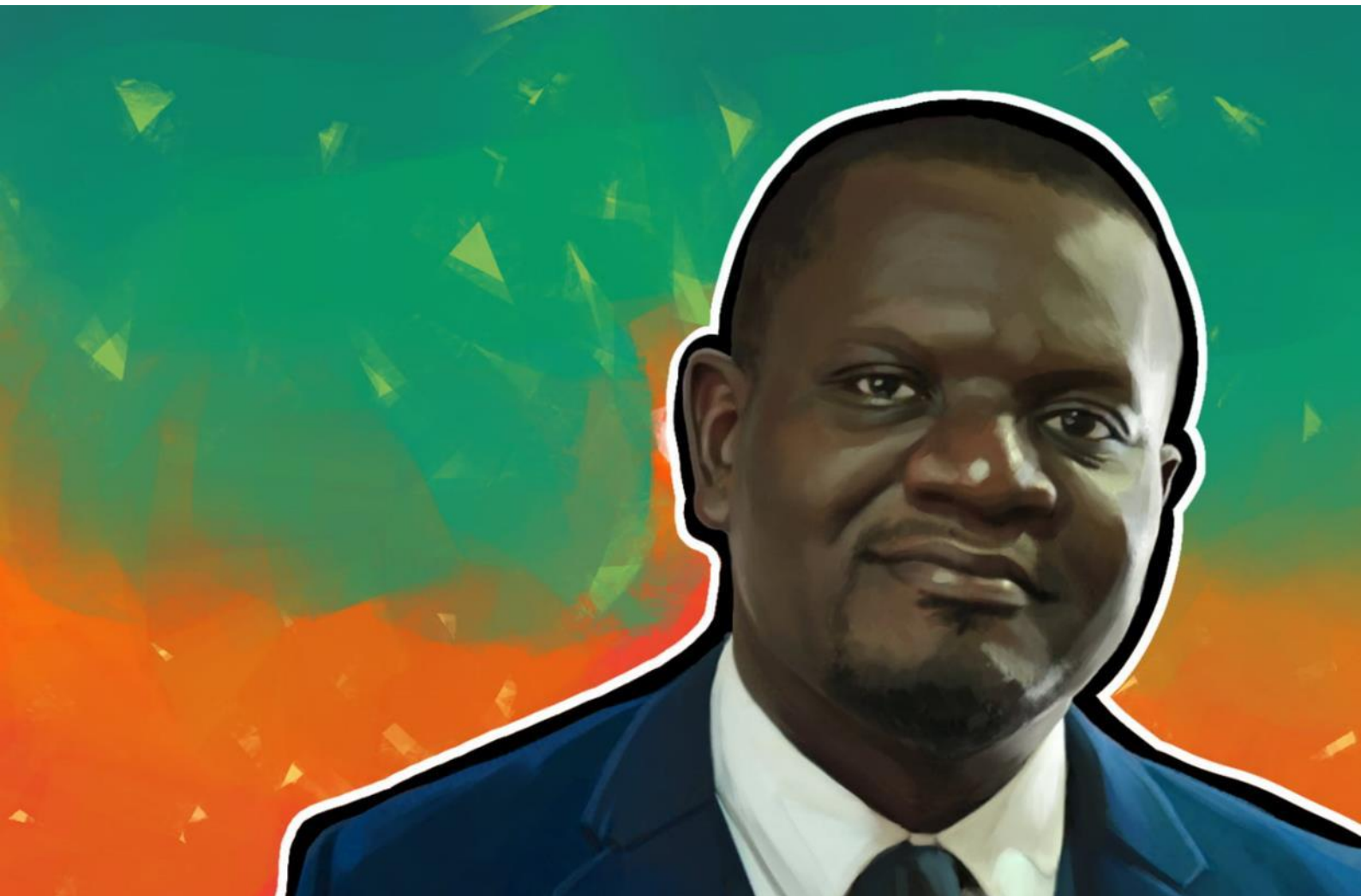
회원국가들에게 어떤 혜택이 제공됩니까?

- 아프리카 사무국은 원자재 교역의 재고 지원에 10억 달러, 아프리카인으로 구성된 주주 구조의 자동차 산업과 밸류 체인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10억 달러를 지원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완제품은 역내 무관세로 교역됩니다.

고충 접수 및 분쟁해결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예를 들어, 가나에서 교역하는 민간 회사가 고충을 접수하고자 할 때, 가나 무역부 장관에게 고충을 접수하고, 무역부는 48시간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중재 의정서로 갈 필요없이 무역부에서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중재 수준에서 분쟁을 다뤄게된다면 주재국에 상주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들로 지원되는 패널로 중재가 진행됩니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ptember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afcfta-recent-developments-with-louis-afful/page/1>

Overview on the Provision of “Buy Now Pay Later” Services in Egypt

이집트의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

-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지나오며 가속화된 디지털화로 비접촉식 결제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결제 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광범위한 디지털 결제 방식이 채택되고 있으며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당국과 이집트 중앙은행을 필두로 이집트 정부는 새롭게 금융정책을 발표하여 새로운 금융 정책 및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이집트 내에서도 새로운 금융 결제 서비스 및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Buy Now Pay Later (이하 “BNPL”) 서비스는 ‘구매는 지금, 결제는 나중에’ 라는 의미로 소비자 대신 결제업체가 먼저 물건 값을 가맹점에 지불하고 소비자는 결제 업체에 분할 납부하게 해주는 후불결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편리성과 접근이 용이한 만큼 새로운 결제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법에 따른 라이선스 요건

- 2020년 소비자 금융법 18호 (이하 “소비자 금융법”)는 소비자 금융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더불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금융규제당국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소비자 금융법 1조에 의거 소비자 금융활동이란 소비 목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에 할당된 자금을 정기적으로 조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카드 결제나 이집트 중앙 은행에서 승인한 기타 결제 방식은 다 포함됩니다.
- 할부금 상환 기간이 금융규제당국에서 규정한 기간 (최소 6개월) 보다 짧은 경우, 소비자 금융활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동 법에 따르면 소비자 금융회사는 이집트의 모든 비은행 금융 서비스를 감독하는 규제 기관인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소비자 금융법은 소비자 금융활동에 참여하고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는 (i) 주식회사여야 하며, (ii) 회사의 최소 발행 및 납입 자본이 EGP 10,000,000 (천만 이집트 파운드)에 달해야 하며, (iii) 자본의 50%는 법인이 소유하고 자본의 25%는 금융기관 (금융규제당국 관할 법인 또는 이집트 중앙은행의 인가를 받은 은행) 이 소유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금융법 적용 대상 상품 및 서비스

- 소비자 금융법 2조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1) 각종 차량 및 승용차
- 2) 내구재 (가전제품 등)
- 3) 교육 서비스
- 4) 의료 서비스
- 5) 여행 및 관광 서비스
- 6) 기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화 또는 용역

포용 금융 정책

- 지난 2020년 2월 8일 이집트 정부는 2022년 핀테크법 5호 (이하 "**핀테크법**") 를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법에 정의된 금융기술 (financial technology) 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금융 서비스, 금융 및 보험 활동이 융합된 매커니즘입니다. 금융규제당국은 비은행 핀테크 기업에 대한 허가 및 규제를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핀테크법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금융 등 비은행 금융부문 기업을 규제하고 투명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새로 발표된 핀테크법은 비은행 금융 서비스 (BNPL 서비스 포함) 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및 소비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비은행 핀테크 기업 또는 금융기업 (소비자 금융활동 포함) 의 사업 운영 라이선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직접 및 간접 주주 구조 설립
- 2) 필요한 기술 인프라, 시설, 정보 기술 및 기타 보안 시스템 마련
- 3) 회사 활동은 금융 규제 당국에서 발급한 라이선스에 지정된 활동으로 제한

- 더불어 금융규제당국은 주주 구조, 이사회 구성 및 이해 상충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 발행해야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금융규제당국은 금융 기술을 통해 비은행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및 법인의 설립, 허가 및 승인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2022년 법령 58호를 발표하였습니다.

- BNPL과 같이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관련 법령이 도입되고 금융의 디지털화가 상당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집트 내 핀테크 산업 규모 및 금융 회사의 사업 활동 범위가 더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ptember 2022

<https://turtl.tamimi.com/story/overview-on-the-provision-of-buy-now-pay-later-services-in-egypt/page/1>

Al Tamimi & Company News



Al Tamimi & Company 뉴스

사우디아라비아 AI Khobar 사무소 확장 이전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AI Khobar 사무소가 Abdulhadi Al Hugayet Tower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알타미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Riyadh, Jeddah, AI Khobar 3곳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avid Yates 영입 인사 - Digital & Data 역량 강화

알타미미는 지난 8월 10일 David Yates 파트너 변호사를 알타미미 Digital & Data 팀 지역 총괄 변호사로 영입하여 Digital & Data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관련된 규제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시점에 알타미미는 15년 이상 이 분야에 국제적인 경험을 갖춘 David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복잡함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팀이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타미미,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로펌 최초로 NFT 컬렉션 출시

지난 11월 14일, 알타미미는 1991년 첫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지역의 법률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제공해온 월간 간행물 Law Update의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에 영감을 받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로펌로서는 최초로 NFT를 출시했습니다.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950 장을 민팅하여 출시한 NFTamimi 컬렉션의 거의 모든 작품이 판매 완료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알타미미, Salik IPO 자문

알타미미는 두바이의 독점 톨게이트 운영사인 Salik의 기업 공개 (이하 “IPO”)와 두바이증권거래소 (Dubai Financial Market) 로의 상장 업무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Salik의 유일한 주주인 두바이 정부가 재무부를 통해 보유한 15억 주의 매각은 2022년 9월 29일에 두바이주식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알타미미의 자본시장 그룹 본부장인 Andrew Tarbuck 파트너 변호사는 이 IPO는 역사적으로 2007년부터 RTA의 사업 부문이었던 Salik을 IPO 준비를 갖춘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 두바이 정부, Dubai Executive Council, Supreme Legislative Council, RTA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던 거래였다고 전했습니다.



Korea Group 뉴스



김승현 변호사 영입 인사 - 한국팀 역량 강화

알타미미는 지난 2월 20일 김승현 변호사를 한국팀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여 중동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더욱 전문성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팀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중동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에 한국의 건설 기업들과 선두적인 로펌들에서 건설, 중재, 프로젝트 파이낸스, M&A, 기업법무 등의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김승현 변호사의 영입으로 알타미미는 우리 기업에게 더욱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원 변호사, 2022 건설플랜트 협의회 세미나에서 발표

지난 11월 17일 UAE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 국내건설사와 유관기관들이 모두 참석한 UAE 건설플랜트 협의회 세미나에서 알타미미 한국팀의 하지원 변호사는 최신 UAE노동법 개정내용과 함께 작년 5월부터 강화된 자국민고용 정책과 내년 도입되는 실업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처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박이세 변호사,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 발표

알타미미 한국팀의 박이세 변호사는 지난 12월 8일 법무부가 개최한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 (Transition to the new BEE) 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세계은행 BEE 지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는 세계은행 (World Bank) 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각국의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세계은행 및 각국의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이 2023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기업환경 평가기준 (BEE - Business Enabling Environment) 을 소개하고 관련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하지원 변호사, 중동 주요국의 ESG정책 및 규제동향 발표

지난 12월 15일, 알타미미 한국팀의 하지원 변호사와 ESG Advisor, Hamza Al-Haboubi 는 UAE 의 한인경제인연합회 (EKBA) 가 개최한 "2022년 제4차 경제 세미나 및 송년오찬" 에서 중동 주요국의 ESG정책 및 규제동향과 이에 따른 ESG 경영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알타미미는 중동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별도의 ESG팀을 운영하며, 중동의 주요국가들이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ESG 관련 규제들에 따른 경영상 리스크에 대해 분석하고, 각 기업들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타미미 한국팀, 리걸타임즈 창간 15주년 특별호에 소개

리걸타임즈 창간 15주년 특별호에 알타미미 한국팀이 [2022 베스트 로펌] 중 중동 로펌 으로는 유일하게 소개되었습니다. 기사 전문을 통해 율한해 알타미미 한국팀의 활약상과 다양한 업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Legal Times website with a headline in Korean: "[2022 Best Law Firms in Korea] Al Tamimi, 투자등 전문 분야... 집행사건도 두각". The article text discusses Al Tamimi & Co.'s recognition in the 2022 Best Law Firms in Korea survey, highlighting their expertise in investment and execution cases. A photo of a man in a suit is also visible.

기사전문보기: <https://lnkd.in/d8rhAvji>

알타미미, 카타르 내 교민 대상 부정수표 발행 범죄 관련 법률 세미나 진행

알 타 미 미 는 지 난 8 월 7 일 , 주카타르대한민국대사관의 요청으로 주재국 내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수표 발행 범죄 관련 법률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카타르 소송팀의 Roy Georgiades 파트너 변호사와 한국팀 총괄 하지원 변호사는 발표자로 참여하여 부정수표 관련 범죄 성립 요건과 유의점, 형사 절차, 항소 방법, 처벌, 대응 방안 및 그 외 주재국 법률상의 사항 등을 설명하였고, 간단한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 지 원 변호사는 2018 년 부 터 주카타르대한민국대사관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타미미 한국팀, 김·장 법률사무소와 글로벌 해운이슈 세미나 공동 주최

지난 10월 14일 한국해운협회가 후원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와 알타미미가 함께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고조에 따른 해운 이슈"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세미나에서 알타미미 해상 분야 전문 오마르 변호사가 연사로 참석해 중동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해운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 제재 조치 강화로 해상운송의 배상 책임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해상 전문가들의 대면 토론 및 세미나는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알타미미, 중동 내 분쟁해결 방안과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세미나 개최

알타미미는 지난 10월 12일 한국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KCAB INTERNATIONAL) 후원으로 “중동 내 분쟁해결 방안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제로 대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활동하는 현지 변호사들이 연사로 참여하였고 각국의 변호사들은 그 간의 다양한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분쟁 / 중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Hosted by
AL TAMIMI & CO.

Sponsored by
KCAB INTERNATIONAL, ICAE, KCA, IHCF

Invitation

The MENA: Dispute Resolution and Saudi Arabia Business (What is not in the Text Book)

중동최대법률 AI Tamimi & Company (알타미미)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후원으로 아래와 같이 “중동 내 분쟁해결방안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로써 영어로 진행됩니다 (각 세션 말미에 한국어 요약이 제공됩니다).

2022년 10월 12일 (수) 오후 4시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 제1심리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8층)

송형민 변호사, 국제 조세 및 이전가격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 진행

알타미미 한국팀의 송형민 변호사는 지난 10월 12일 각 리야드, 젯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된 TAX 세미나에서 국제 조세 및 이전가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무소에 상주하는 송형민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들의 사우디 내 조세 자문 및 소송 대응과 관련하여 전방위적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및 주젯다총영사관의 법률자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Korea Group Deals and Cases

알타미미 한국팀의 주요 업무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국전력공사 (KEPCO)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 발전소 설립 및 인허가 자문

송형민 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 자푸라 지역에서 수행중인 열병합 발전소 설립 업무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기업팀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준비에서부터 외국인 투자면허, 정관작성, 법인등록, 열병합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면허 취득 등 열병합 발전소 설립에 필요한 전 범위에 걸쳐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Water 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등 라이선스 발급기관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법인설립 업무를 완수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사업수행 일정을 맞추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국내건설사의 이라크내 대형건설사업의 계약 타절 관련 자문

하지원 변호사와 알타미미 이라크 바그다드 사무소의 기업자문 (Corporate Commercial) 팀의 Thomas Calvert 변호사와 Ali Al Dabbagh 변호사는 국내 건설사가 이라크내 신도시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기성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의 사유로 하는 계약해지 통지와 계약타절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건설사의 카타르내 지사 설립

하지원 변호사와 알타미미의 도하 사무소 기업법무 (Corporate Structuring) 팀은 국내 건설사가 카타르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사업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지 지사 설립에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한해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에게만 자국내 지사 설립을 허용해 주고 있어, 지사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낙찰통지서 (Letter of Award) 가 필요하며 지사는 해당 계약 수행만 가능합니다.

한미글로벌 사우디 내 기업구조조정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기업팀은 한미글로벌의 사우디 법인 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사우디 부동산회사인 AI Akaria와 오랜기간동안 합작회사를 유지하여 왔는데, 파트너 관계를 청산하고 AI Akaria의 주식을 전부 인수함으로써 사우디법인을 한미글로벌의 자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송형민 변호사는 AI Akaria와의 주식양수도계약 작성, 협상, 체결 및 주식양도절차 완료 등 거래의 모든절차에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 (KEPCO) 의 요르단 내 발전소 프로젝트 리파이낸싱 관련 자문

알타미미 요르단 사무소의 금융 및 에너지팀은 해당 프로젝트의 스폰서이자 프로젝트 회사의 주주인 한국전력공사에 주식질권설정계약, 담보계약 등을 포함하는 주요 금융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자문하고, 거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로컬 카운셀로써 자문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오만 그린 암모니아 사업 타당성 조사 자문

하지원 변호사와 알타미미 오만 사무소의 기업자문 팀은 오만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 담수한 물을 수전해하고 생성된 그린수소를 그린암모니아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수출입은행에 자문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오만내 사업구조 및 인허가제도, 외국인 투자 관련 (토지 사용권 취득 등 포함) 법제에 이르기까지 오만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한 제반 법률과 절차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F&B 사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프랜차이즈 진출 관련 자문

송형민 변호사, 하지원 변호사 및 알타미미의 기업자문 (Corporate Commercial) 팀은 국내 F&B사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프랜차이즈 진출에 자문하며 가맹정보공개서 (Disclosure Document), 가맹계약 (Master Franchise Agreement) 을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별 등록 요건 등과 관련한 전과정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성신양행 사우디 제조법인 설립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기업팀은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신양행의 사우디내 제조법인 설립을 매우 빠른 시간내에 완료하였습니다. 서류 준비, 상호등록, 외국인투자면허 취득, 정관작성, 사업자등록증 취득 등 기업설립업무의 각 단계별로 어떠한 지연도 없이 최단 시간내에 설립업무를 완료함으로써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하였습니다.

국내건설사의 UAE 아즈만 토후국내 토지매각 거래 자문

하지원 변호사와 알타미미의 부동산 (Real Estate) 팀은 아랍에미리트의 토후국 중 하나인 아즈만 (Ajman) 토후국에 지난 15년 이상 국내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며, 텀시트 (Term Sheet) 및 토지매매계약 (Sale and Purchase Agreement) 작성 및 협상, 토지 등기이전 (Title Transfer) 과 매각대금 수령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주도적으로 매도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알타미미 조세 드림팀, 사우디 내 다수의 국내 대기업 법인세 소송 업데이트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조세팀은 사우디에서 다수 국내 대기업들의 다양한 세목 관련 사건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항소심을 진행중인 사안이 있기는 하지만, 사우디 세법상 고려해야할 법률적 쟁점들을 심도 깊게 연구하여 고객사들에게 최적화된 방안들을 제시하며 대다수 사건에서 성공적인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SK 에코플랜트와 삼성엔지니어링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2심판결에서도 승소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내면서, 간주 과세 등 사우디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사우디 사법제도하에서 실제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기에 국내 업체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Al Tamimi & Company's Insights

알타미미는 정기간행물 Law Update, 최신 입법, 개정, 규제의 변화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최신법률정보 Client Alert 을 비롯한 다양한 간행물과, 시기적절한 주제의 웨비나, 강연물을 영상으로 제공하여 중동 지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내 건설 분쟁 (2022년 12월 13일)

알타미미의 쿠웨이트 사무소는 관습법 체계인 영국법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건설계약 서류의 조항들이 대륙법 체계인 쿠웨이트법과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적용되는지 비교하고, 최신 국제 중재의 동향과 제한점들을 논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사법 개정 (2022년 11월 22일)

2022년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사법이 상당 부분 개정되어, 전환사채 (convertible debt) 및 지분 파이낸싱 옵션, 사업체의 종류, 이사의 의무 등 신규 회사법의 여러 측면을 하이라이트하며 기업이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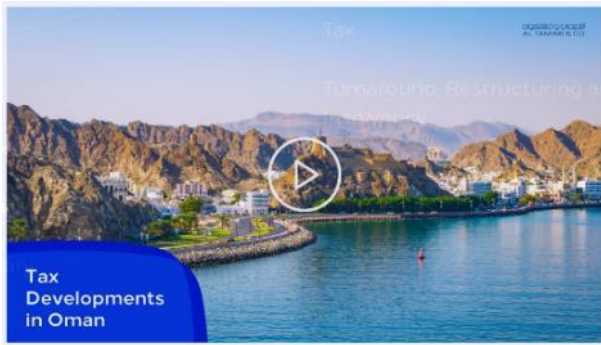
UAE 핀테크 산업에 대한 법률 · 규제 (2022년 7월 17일)

두바이상업은행 (Commercial Bank of Dubai) 의 웨비나 시리즈에서 알타미미의 Divya Abrol Gambhir 변호사는 UAE에서 핀테크 기업이 준수해야 할 라이선스 요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카타르 건설 계약의 리스크 관리 (2022년 6월 27일)

알타미미의 카타르 건설팀은 손해배상액, 책임의 한도, 하자 (defects), 제척기간에 대한 카타르 법의 해석과 코로나 보상 제도의 최근 업데이트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오만의 조세제도 변동 및 동향 (2022년 6월 20일)

오만의 조세제도는 최근 몇 년 간 급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소비세 (excise tax),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VAT) 가 도입되었고, 법인세법도 상당 수준 개정이 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가 고소득자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타미미의 조세팀은 오만의 세제 변동이 사업에 미칠 영향과 리스크를 논의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알타미미의 더 많은 강연 영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해결 집행 방안 (2022년 6월 20일)

국내 및 해외 판결, 중재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UAE,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타미미 분쟁해결 변호사들은 각 사법권의 새로운 법, 집행 과정, 중요한 판결들을 논의했습니다.



Tamimi Talks 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최대 로펌인 알타미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각 사법권의 최신 법률 뉴스와 동향을 전달하는 팟캐스트 시리즈입니다.

알타미미의 팟캐스트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Korea Group - Al Tamimi & Company - MENA



Al Tamimi & Company



@AlTamimiCompany

www.tamimi.com

